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vol.15

2020

공공기록물법과 전자정부법과의 관계



공공기록물법과 전자정부법과의 관계

임신영 기록연구사(기록정책부 정책기획과)

목 차

1. 법률 간 관계와 입법활동
2. 공공기록물법과 전자정부법의 관계
3. 맺음말

「기록관리 이슈페이퍼」는 기록관리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열린 논의를 위해 다양한 제언과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수록된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기관의 책임과 역할, 권리 및 의무 부과 등에 있어 서로 상충되거나 중복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법 또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그 목적과 적용범위를 달리하여 제정되었으나, 전자적인 행정환경 하에서는 전자정부법 등 다른 법률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19년 3월 김병관 의원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은 디지털정보의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공기록물법과 중복,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록공공체 내에서 큰 이슈가 되었다.

이에 이 이슈페이퍼는 공공기록물법과 전자정부법의 관계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부처협의 등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자정부법 상에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마련되기까지의 경과를 보여줌으로써 공공기록물법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견지해야 할 방향성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1. 법률 간 관계와 입법활동

법의 체계에 있어서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있으며, 명령·규칙의 상위에 있다. 법치 국가에서 모든 국가의 작용은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률로써 규율되어야 할 사항은 대단히 많다. 헌법은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을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제7조, 제8조, 제12조, 제21조 등), 이 외에도 특히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규율되어야 한다.

모든 법률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범위”를 정하고, 그 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기관의 책임과 역할, 권리·의무 부과 등에 있어 서로 상충되거나 중복됨이 없도록 그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모든 행정기관의 사무는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법률의 한계를 초과하는 행정 작용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사무에 수반되는 예산과 관련하여서도 한정된 자원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간의 작용은 상충되거나 중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법률 상 “특별한 경우에 대한 인정”은 보장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작용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완전할 수 없으며, 다른 작용들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작용을 규율하는 법률 또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속에서 일반성을 띄되, 특수성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록물법 제8조는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정부법 제6조는 “행정기관 등의 대민서비스 및 행정관리의 전자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그 특수성을 존중하고 있다. 모든 법률이 취하여야 하는 이러한 태도는 일반법과 특별법이라는 구분을 통하여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특별법은 특정한 사람과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이며, 일반법은 그러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따라서 일반법은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특별법은 일반법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물, 행위 또는 지역 등에 따라 특별히 취급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률 간의 관계는 어떤 법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으로, 법률의 효력과 적용순서를 고려할 때에는 매우 중요한 구분점이 될 수 있다.

모든 입법 활동은 입법에 관련된 정부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 되는 것이 입법 활동의 기본적인 원칙(법제업무운영규정 제3조)이므로¹⁾ 어떤 법률의 효력이 우선하는 지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에 그 문제는 입법 활동 과정 중에 적극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법률의 경우 입법에 관련된 정부기관 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조정하는 기관인 법제처의 심사는 물론, 국회라는 입법 기관의 심사·의결(상임위 심사·의결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의결 → 본회의 심사·의결) 과정에서 원안 논의가 불가능하므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문제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들어가는 글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입법 활동에 대하여 이렇듯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하는 것은 '19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공공기록물법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 최종적인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는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2. 공공기록물법과 전자정부법의 관계

공공기록물법과 전자정부법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두 법률의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든 법률은 그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기록물법은 공공기관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함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전자정부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1)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르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법령안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다.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두 법률의 목적은 확연히 구분되지만 분명한 접점을 만든다. 전자정부법의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90년대 후반부터 강력하게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환경이 전자적으로 급변하였고, 공공기록물법은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 기관으로 하여금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하도록 하였다.(공공기록물법과 전자정부법은 각각 '99년과 '01년에 제정되었고, '07년에 두 법 모두 전부개정 되었다.)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라는 전자정부법의 목적을 중심으로 다른 법률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① 전자정부의 이념을 실현하고 조직하기 위한 법률로서 전자정부법을 중심으로, ② 전자정부의 작동을 돕기 위한 법률로서 공공기록물법을 비롯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전자서명법,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공공데이터법 등이 있고, ③ 전자정부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법률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정보격차해소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률들이 모두 “전자정부법 관계 법률”인 것이다. 물론 공공기록물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 관계 간의 상대성은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관계 법률”들은 제정된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서로 관련성은 갖되, 반드시 상응하여 작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록물법 또한 전자정부의 구현이라는 큰 목적 하에서는 전자정부법의 관계 법률로서 기능할 수는 있지만, 세부 규정을 보면 현행 전자정부법 상에 공공기록물법의 특별한 규정으로 볼 만한 규정은 없다.

법 제36조제4항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가공·이용·제공·보존·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공공기록물법 상 기록물의 보존·폐기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일부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우려는 전자정부법 제6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견제되어 왔다.

〈 표 1 〉 전자정부법과 공공기록물법상 관리 대상 비교

| 「전자정부법」 | | 「공공기록물법」 |
|--|---|---|
| 현행 | 전부개정안 | |
| <p>(법 제2조 6) “행정정보”란 행정기관 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u>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u></p> <p>(법 제2조 7)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u>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u>를 말한다.</p> <p>(법 제2조 8) “전자화문서”란 종이 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u>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u>를 말한다.</p> <p>(법 제2조 11)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u>행정정보, 전자적 수단</u>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u>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u> 등을 말한다.</p> | <p>(법 제2조 5) “디지털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u>다른 법령에서 데이터, 행정정보 등으로 정한 것으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것은 디지털정보로 본다.</u></p> <p>(법 제2조 8)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u>디지털정보, 디지털정보의 처리</u> 등을 위하여 구축한 <u>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기술</u> 등을 말한다.</p> | <p>(영 제2조 2)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u>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u>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p> <p>(영 제2조 11)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란 각급 행정기관에서 업무상 사용하고 있는 <u>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u>를 말한다.</p> |

그러나 지난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 원안(의안번호 19027)이 입법예고 되면서 국가기록원이 공공기록물법을 근거로 하여 더 이상 전자기록물을 보존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던 것이 사실이다. 해당 전부개정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던 중에 추진된 것이어서 국가기록원도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였다.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대표 발의(총 13인 발의²⁾한 것으로 사실 상 정부의 의뢰입법안이었다. 이미 학계 등에서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에서 “정보자원보존기획단”을 발족하여 “정보자원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는

2)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중에 법률안을 발의하고 심사하여 가결하거나 폐기하는 활동을 하며, 이는 국회의원의 핵심활동 중 하나이다.

것이 공공기록물 관리 업무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고, 그런 중에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전부개정안의 일부내용은 그간의 우려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었다.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에서 문제가 된 조항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전자정부 및 행정기관 등의 정보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률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한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다른 법률이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서만 그 특수성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일반법과 특별법의 기본적인 관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조항이었다.

〈 표 2 〉 전자정부법과 공공기록물법상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전자정부법」 | | 「공공기록물법」 |
|---|--|---|
| 현 행 | 전 부 개 정 안 | |
| (법 제6조) 행정기관등의 대민 서비스 및 행정관리의 전자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법 제3조) ① 전자정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전자정부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될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법 제8조) 기록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둘째, 법 제46조(정보자원 관리)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보자원의 생산, 이용, 공개 및 폐기 등이 포함된 관리기준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보자원 중 디지털정보³⁾는 공공기록물법 상 전자기록물⁴⁾을 모두 포괄하며, 전자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이미 공공기록물법에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업무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었다. 이 조항은 앞서 언급한 현행 법 제36조제4항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가공·이용·제공·보존·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3)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

4)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전부개정안과 같이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

〈 표 3 〉 전자정부법과 공공기록물법상 정보자원(기록물) 관리

| 「전자정부법」 | | 「공공기록물법」 |
|----------|--|---|
| 현행 | 전부개정안 | |
| 관련 규정 없음 | (법 제46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에 따라 소관 정보자원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u>1. 정보자원의 생산, 이용, 공개 및 폐기</u> | (법 제19조) 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 법 제68조(디지털정보의 보존)에서는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를 별도로 저장·보존토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대상 디지털 정보를 선정(선정기준 및 보존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정된 디지털정보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저장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공공기록물법상 기록물의 보존과 명백히 중복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그럴 경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공공기록물법과 전자정부법이 정한 “공공기관의 범위”가 거의 동일⁵⁾하다는 점에서 전부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업무상 혼선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5) 전자정부법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포함되지 않으며, 공공기록물법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 표 4 〉 전자정부법과 공공기록물법상 정보자원(기록물) 보존

| 「전자정부법」 | | 「공공기록물법」 |
|----------|---|---|
| 현행 | 전부개정안 | |
| 관련 규정 없음 | <p>(법 제68조)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디지털정보의 변경, 훼손, 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를 정하여 디지털정보를 별도로 저장·보존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을 폐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 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보존대상 디지털정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디지털정보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저장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보존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를 다른 행정기관 등이 통계 등의 목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p> <p>④ <u>보존대상 디지털정보의 선정 기준 및 보존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p>(영 제26조) 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u>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u> (이하 생략)</p> <p>(영 제43조) ① 기록관 또는 특수 기록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 중 <u>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u>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u>생산부서 의견조회</u>,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u>기록물관리 전문요원</u>(해당 기록관 또는 특수 기록관 소속 전문요원을 말한다)의 <u>심사 및 제4항에 따른 기록물평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u>하여야 한다.</p> |

국가기록원에서는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부처의견조회 기간에 위의 3가지 조문에 대하여 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정보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하는 디지털정보에 대해서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대한 적용 배제”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 이후 전자정부국과 여러 차례의 의견조정이 있었고, 국가기록원장은 해당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관 의원실을 방문하여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후 의원계서는 전자정부국에 공공기록물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이 공공기록물법과 충돌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전자정부국은 국가기록원과의 의견조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 제68조제3항에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문을 신설하여 정부 측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19.6월)하였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최종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19.6.26. 행정안전부 전체회의 상정, 소위 회부)에 있다.

〈 표 5 〉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 수정안(제68조 관련)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p>제68조(디지털정보의 보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디지털정보의 변경, 훼손, 멸실 등을 방지하고 보존하여야 한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보존대상 디지털정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디지털정보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p> <p>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보존하고 있는 디지털정보를 다른 행정기관등이 통계 등의 목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p> <p>④ 보존대상 디지털정보의 선정기준 및 보존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제68조(디지털정보의 보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디지털정보의 변경, 훼손, 멸실 등을 방지하고 보존하여야 한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보존대상 디지털정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디지털정보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보존하고 있는 디지털정보를 다른 행정기관등이 통계 등의 목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p> <p>⑤ 보존대상 디지털정보의 선정기준 및 보존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계류 중인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은 공공기록물법 외에도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을 소관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부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등과 많은 협의를 거쳤고, 최종 국회에 제출된 정부 측 의견은 입법 예고된 원안을 상당부분 수정한 안이다.

앞서 설명하였듯 정부의 입법 활동은 입법에 관련된 모든 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공공기록물법과 전자정부법과의 관계와 같이 어떤 법률의 효력이 우선하는지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 그 다툼은 이와 같은 입법 활동 과정 중에 적극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발의에 따른 입법절차 과정에서 국가기록원과 전자정부국의 의견조정 과정은 이러한 입법 활동의 기본 원칙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3. 맺음말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의 추진과는 별개로 “업무상”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과정 중에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관리방안 마련” 과제에 대하여 많은 기관에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사업 및 공공데이터 개방 등 관련 기존 사업들과 국가기록원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를 위한 새로운 행보가 중복되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간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의 영역이 전자정부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정보시스템 운영과 그에 따른 정보자원의 관리영역과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해왔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은 명확하게 구분하되, 서로 협조하고 지원하는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자정부국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사업 등의 영역에서 이러한 국가기록원의 입장과 역할에 대하여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서는 행정정보시스템의 폐기 시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데이터 세트의 기록화 여부(보존과 폐기)에 대하여 검토토록 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의 백업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관계 기관들 또한 데이터의 처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법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록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관 또는 기록공동체에서 표명하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그간 법령상 정의규정에만 존재했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영역을 현실화하면서 각급 공공 기관에 새로운 기록관리 영역이 “창조”되는 지금의 과정이 “부담”과 “우려”로 표명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99년 공공기록물법 제정 이후 20년간 공공행정 분야에 기록관리 영역이 자리 잡는 과정이 있었듯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영역이 기록관리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기까지 마찬가지로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지난할 그 “시간”들 속에서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법이 추구하는 기록 관리의 원칙과 목적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다른 법률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계 부처, 기록공동체 등과 더할 나위 없이 소통하고 협업하고 지원하고 때로 조언과 도움을 청하는, 이른바 “거버넌스형 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정충식, 「전자정부법 제정 과정 및 문제점 분석」,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1.
- 황병천, 「전자정부법 체계 정비 방안 연구」, 『안전행정부 발간자료』, 2007.
- 김유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의의와 개선방안 - 국가기록원의 위상과 국민의 알권리를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8권 제1호, 2008.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법과 제도의 이해』, 2009.
- 손현,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제 정비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 이원규, 「기록관리관련법령」, 『선인』, 2017.
- 한국법제연구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19.

||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발간 목록 ||

| 발간호 | 제목 | 작성자 | 발간일 |
|---------|--|-------------------------------------|----------------------|
| vol. 1 | 기관 심층인터뷰를 통한 BRM 단위과제 운영 개선 방안 수립 | 황정원 기록연구사 | 2019. 10. 8. |
| vol. 2 | 「공공기록물법」 상의 기록의 개념 검토 ① 기록의 개념과 성립요건 - 정보와 증거로서의 기록의 함의를 기록물법에 적용하기 - ② 기록이란 무엇인가? -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관리 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 이젬마 서기관 임신영 기록연구사 | 2019. 10. 22. |
| vol. 3 | 대통령기록물 평가체계 개선 방안 | 윤경호 행정사무관 | 2019. 10. 31. |
| vol. 4 | "도전! 기록관리 명강사되기" 기록관리 강사양성제도 도입 | 김명옥 사서사무관 | 2019. 11. 15. |
| vol. 5 | 국가기록원 블록체인 기록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의 의미와 전망 | 왕호성 기록연구사 | 2019. 11. 22. |
| vol. 6 | 전자기록 장기보존정책의 방향 | 이지영 공업연구사 | 2019. 12. 5. |
| vol. 7 | 디지털기반 대통령기록관리체계 모델 재설계 | 김현숙 공업연구사 | 2019. 12. 12. |
| vol. 8 | 건축아카이브의 해외 동향 및 향후 과제 - ICAA BRAGA 2019 참관기 - | 김수연 전문임기제 허인연 전문임기제 | 2019. 12. 13. |
| vol. 9 | 전자기록 장기보존패키지 모델 시험과 새로운 모델 제안 | 신동혁 공업연구사 김상국 전산사무관 나미선 학예연구관 | 2019. 12. 17. |
| vol. 10 | 기록물 매체수록 해외 동향 및 향후 과제 | 박지혜 공업연구관 | 2019. 12. 24. |
| vol. 11 |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결과(2018년 생산분) | 김현애 기록연구사 | 2020. 1. 15. |
| vol. 12 | 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한 생산현황 통보 자동화 방안 | 하정하 기록연구관 | 2020. 1. 29. |
| vol. 13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양성제도 현황과 전망 - 교육원 과정을 중심으로 - | 성주영 기록연구사 | 2020. 2. 12. |
| vol. 14 | 정기실태점검을 통해서 본 기록관리 개선방안 | 박지태 학예연구관 송혜현 사서사무관 | 2020. 2. 27. |
| vol. 15 | 공공기록물법과 전자정부법과의 관계 | 임신영 정책기획과 | 2020. 3. 11. |
| vol. 16 | 해외 공공기록 평가선별제도 관련사례 및 시사점 | 조영주 지원기준과 | 2020. 3. 18. 발간예정 |

발간 예정 목록

- 속기록 생산의무 회의 지정제도
- 기록관리 지원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심층인터뷰 방안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방안
- 특수지 기록물과 보존
- 해외수집기록물 소개: UN Radio Service 제작 한국전쟁 관련 녹음자료
- 국가 중요기록물 보존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원 복제 지원사업>, 10년을 돌아보며
- 손상파일 검사 복구 프로토타입 적용 방안
-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추진
-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서식
- 국외 소개 한국 병풍 <오른 행실도> 복원처리 지원을 위한 영국박물관 방문기

※ 향후 이슈페이퍼의 주제 및 발간 일정은 원내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록관리 이슈페이퍼」는 기록관리 현장의 다양한 현안 논의와 기록인 여러분의 귀중한 연구성과 공유를 기다립니다.

국가기록원 연구협력과 ☎ (042) 481-6353 ✉ issuepaper@korea.kr

'신뢰받는 기록관리로 정부는 투명하게, 국민은 행복하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Tel 042-481-6353 Fax 042-481-6234